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설치, 조성, 사용 근거 마련〉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56호)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53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개요	1
--------------	---

【성일종의원안】

1. 제안 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임호선의의원안】

1. 제안 경위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II . 검토의견	7
-----------------	---

I. 개요

【성일종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제 안 자 : 성일종의원 등 14인

나. 제안연월일 : 2025. 8. 4.

다. 회부연월일 : 2025. 8.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6조 2,833억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22년도 우리나라 GDP의 약 1.2%, 국가예산의 약 4.3% 수준에 해당한다고 함.

이러한 도로교통사고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필요함.

그런데, 이러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재원으로 한 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 부과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36조의2 신설).
- 2)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현행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 및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136조의3 신설).
- 3)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경비,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6조의4 신설).

- 4)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경찰청장이 관리·운용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등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6조의5 신설).

【임호선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나. 제안연월일 : 2025. 9. 12.

다. 회부연월일 : 2025. 9. 1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는 124만 3,627건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2,735명, 부상자는 193만 7,785명으로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은 약 43조 7,670억원으로 추정됨.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도로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등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필요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힘든 실정이므로, 현행법에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신속하고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체계를 마련하여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119조의2부터 119조의6까지).

나. 주요내용

- 1)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함(안 제119조의2 신설).
- 2)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현행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 및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119조의3 신설).
- 3)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경비,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안 제119조의4 신설).
- 4)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경찰청장이 관리·운영하고, 그 업무의 일부

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등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9조의5 신설).

5)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름(안 제119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관리·운영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은 국고에 귀속되는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및 같은 법 제160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30%(성일종의원안) 또는 50%(임호선의원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한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하고, 동 기금의 용도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임(성 일 종의원안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6 신설, 임호선의원안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6 신설).

현 행	성일종의원안	임호선의원안
<신 설>	제11장의2 도로교통안전기금	제10장의2 도로교통안전기금
<신 설>	제136조의2(도로교통안전기금의 설치 등)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19조의2(도로교통안전기금의 설치 등)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현 행	성 일 종 의 원 안	임 호 선 의 원 안
<신 설>	<u>제136조의3(기금의 조성) ①</u> <u>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u>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u> <u>2. 제3항에 따른 차입금</u> <u>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u> <u>4. 그 밖의 수익금</u> <u>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u> <u>1.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정한다)</u> <u>2.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u> <u>③ 경찰청장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u>	<u>제119조의3(기금의 조성) ①</u> <u>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u>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u> <u>2. 제3항에 따른 차입금</u> <u>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u> <u>4. 그 밖의 수익금</u> <u>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u> <u>1.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정한다)</u> <u>2.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u> <u>③ 경찰청장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u>

현 행	성 일 종 의 원 안	임 호 선 의 원 안
<신 설>	제136조의4(기금의 사용) 기 <u>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u> 1. 제3조, 제4조 및 제59조에 <u>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u> 2.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u>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u> 3.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u>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u> 4.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u>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지원</u> 5. 제73조에 따른 교통안 <u>전교육 사업의 지원</u> 6.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7.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u>연구 및 기술 개발</u> 8.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9.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	제119조의4(기금의 사용) 기 <u>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u> 1. 제3조, 제4조 및 제59조에 <u>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u> 2.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u>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u> 3.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u>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u> 4.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u>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지원</u> 5. 제73조에 따른 교통안 <u>전교육 사업의 지원</u> 6.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7.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u>연구 및 기술 개발</u> 8.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9.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

현 행	성일종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
<신 설>	<u>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u> <u>제136조의5(기금의 관리·운용)</u> ① 기금은 경찰청장이 관 리·운용한다. ② 경찰청장은 기금의 관 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 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 령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u>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u> <u>제119조의5(기금의 관리·운용)</u> ① 기금은 경찰청장이 관 리·운용한다. ② 경찰청장은 기금의 관 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 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 령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u>제136조의6(회계연도) 기금</u> <u>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u> <u>계연도에 따른다.</u>	<u>제119조의6(회계연도) 기금</u> <u>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u> <u>계연도에 따른다.</u>

개정안을 통해 설치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재원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13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은 정부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와 같은 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의 예상 수입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이고,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신호 위반 등을 한 운전자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이며, 같은 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은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등을 한 운전자 등에 대해 부과하는 범칙금임.

현재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3항에 따른 과태료 및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의 예상수입액의 20%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고 있음. 2025년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의 20%에 해당하는 2,81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전입됨.¹⁾

성일종의원안에 따라 정부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3항에 따른 과태료 및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의 예상수입액의 30%를 계상하는 경우 2025년 예산 기준 약 4,215억원, 임호선의 원안에 따라 50%를 계상하는 경우 7,025억원이 일반회계에서 도로교통 안전기금으로 전입될 것으로 예상됨.

이외에도 개정안 제136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도로교통 안전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경찰청장이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

1) 세부사업명칭: 일반회계전입금(기금수입: 91-911)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²⁾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재원>

구분	재 원	세부내용	예상 규모
1	정부의 출연금	제160조제2항·제3항에 따른 과태료 및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30%	성일종의원안 4,215억원 (2025년 기준) 임호선의의원안 7,025억원 (2025년 기준)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미규정	-
3	차입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	-
4	기금운용 수익금	미규정	-
5	그 밖의 수익금	미규정	-

다음으로, 개정안을 통해 설치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136조의4는 신호기·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위험도로·시설물 개선,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은 신호기·안전표지의 설치·관리 주체는 시장등³⁾

2) 참고로, 응급의료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6년(안)까지의 예수금을 살펴보면, 2022년 425억원, 2024년 816억원, 2026년 1,250억원이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예수금이 없었음.

3) 시장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임.

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주체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시장등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주체는 시장등으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권자는 시·도경찰청장으로 정하고 있음.⁴⁾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⁵⁾과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⁶⁾의 내역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이 실시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대상에 포함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2025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전환사업보전금이 지원되었음.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은 2022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2026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임.

4) 참고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는 2021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세부사업인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3232-300)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됨.

(2021년 예산 내역)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953억 2,5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312억 2,000만원 = 1억 2,000만원 × 520개소 × 50%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 ① 신호등 : 923억 7,300만원 = (1,118개소지 × 5,000만원 × 50%) + (1,815개소지 × 5,000만원 × 40%) + (1,607개소 단일로 × 3,500만원 × 50%)

② 무인교통단속장비 : 717억 3,200만원 = (2,863개소 × 4,200만원 × 50%) + (691개소 × 4,200만원 × 40%)

○ 노인보호구역 개선 : 58억원 = 100백만원 × 116개소 × 50%

5)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3231-301)은 지방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등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마지막으로 포함된 연도인 2022년 사업 예산은 365억원(36개 × 2,028백만원 × 지자체 보조 50%)임.

6)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3232-300)의 내역사업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노인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마지막으로 포함된 연도인 2021년 사업예산은 2,450억원이 편성됨(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2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953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58억원, 안전한보행환경 조성 113억원).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용도>

구분	용 도	설치·관리·지정권자	비 고
1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시장등	
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시장등	
3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시장등	
4	교통안전교육 사업	시·도경찰청장	
5	위험도로·시설물 개선	미규정	※ 5. 6. 용도와 관련하여 2021년·2022년까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 계정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된 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2025년, 2026년까지 전환사업보전금 지원)
6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미규정	
7	차입금 및 이자 상환		
8	기금 운용 경비 지출		

개정안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위험도로 개선 등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위험도로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및 피해자를 줄이는데⁷⁾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 등 도로관리기관과 개선사업을 완료한 전국 241개 대상지의 개선 전 3년 평균(2019~2021년)과 개선 후 1년간(2023년)의 교통사고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개선사업 이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4.7명이었으나, 개선사업 후인 2023년에는 10명으로 59.5% 감소했다. 교통사고건수도 2,469건에서 1,699건으로 31.2% 감소함.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2025년 3월 25일 보도자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사망자수 59.5%, 사고건수 31.2% 감소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효과 발표”

특히,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고,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이양한 이후 지급되는 전환사업보전금이 2025년 또는 2026년까지만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도로 개선 사업 등을 위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상남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6,393억원임.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시설 예산 확보액(2024년)>

(단위: 억원)

구 분	확보액	구분	확보액
서울	309	세종	64
부산	192	강원	282
대구	377	충북	309
인천	300	충남	243
광주	85	전북	526
대전	179	전남	850
울산	50	경북	392
경기남부	1,741	경남	-
경기북부	357	제주	137

자료: 경찰청(동 자료는 시도별 데이터를 확인하여 수기로 작성. 경남은 예산 확보액을 미제출)

다만, 개정안에 따라 경찰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도로교통안전기금이 명시되도록 개정되어야 하므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955)의 심사경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⁸⁾

그리고,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⁹⁾는 2019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통합재정수지 (A)	16.9	24.0	31.2	△12.0	△71.2	△30.4	△64.6	△36.8	△44.4	△21.7
사회보장성기 금수지 (B)	39.6	42.5	41.7	42.4	40.8	60.1	52.5	50.3	47.2	52.1
관리재정수지 (A-B)	△22.7	△18.5	△10.6	△54.4	△112.0	△90.5	△117.0	△87.0	△91.6	△73.9

주: 2023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4~2025년은 예산 기준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재정」 92면[동 자료는 기획재정부(2024.9.), 「2024~2028년 국가재무관리계획」 등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신호기 등은 지방자치단의 설치·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955)은 2025년 8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25년 11월 3일 기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음.

9) 재정수지는 해당 연도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해당 연도 재정활동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됨.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괄하는 수치로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지출 차이를 나타냄. 통합재정수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공표하고 있으며 IMF 「정부재정통계 1986」을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하여 계산함.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로서, 재정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함.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재정」 90면·91면)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그리고 현재 개정안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 중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과 기금 운용 경비 지출을 제외한 다른 용도(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는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등이 소관하는 국가 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데,¹⁰⁾ 개정안을 통해 해당 용도의 재원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찰청장이 설치한 도로교통안전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3회계연도 2006회계연도까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를 운영했음.¹¹⁾ 1993~1997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은 4,309억원임.¹²⁾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1993회계연도~1997회계연도)>

(단위: 억원)

연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세 입 액	670	834	885	978	942	4,309

10)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집행됨.

11)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은 1992년 제정 당시에는 부칙 제2조에서 1993회계연도부터 1997회계연도까지 적용하도록 한 뒤, 1997년 11월 개정(의안번호: 150787) 시 2002회계연도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했고, 2001년 12월 개정(의안번호: 160576) 시 2006회계연도까지 개정됨.

12)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영,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0787) 검토보고” 4면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1993회계연도~1997회계연도)>

(단위: 억 원)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총 계
교통안전관리	225	236	284	321	102	1,168 (27.1%)
장비구입비	6	6	7	14	67	100 (2.3%)
운전면허관리	399	444	468	511	616	2,438 (56.6%)
인 건 비	-	63	90	102	116	603 (14.0%)
경상경비	5	36	20	22	8	
예 비 비	35	49	16	8	34	
증 감(%)		24.5%	6.1%	10.5%	△5.5%	
계	670	834	885	978	942	4,309 (100%)

자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영,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0787) 검토보고” 4면, 1997년

경찰청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교통 관련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해외 사례>

구분	근거법률	내 용
미국	Safe, Accountable, Flexible,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2005)	2005~2009년 미국 전역에 2,470억불(약 287조원) 투입,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의 교통안전 프로그램(인프라 구축, 안전교육, 기술지원 등)에 재정적 지원
영국	Road Safety Act(2006)	지방자치단체의 중점 교통안전대책 추진에 대해 중앙정부(교통부)에서 예산 지원, 2011년 기준 9,400만 파운드(약 1,400억원)를 안전교육, 인프라 개선 등 투자

구분	근거법률	내 용
일본	교통안전대책기본법(1970년~), 교통안전추진법(1966년~)	범칙금 수익 전부 이용, 年 1조엔(약 10조원) 가량을 교통안전사업에 투자, 도로교통환경정 비, 안전교육 및 홍보, 사고피해자 지원 등에 주로 활용 *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 우리나라의 과거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와 가장 유사

자료: 경찰청

참고로, 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시설물이 제때 설치되지 않거나,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교통인프라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확대 및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대비한 인프라 구축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교통안전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하는 의견임. 특히, 교통사고 감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육·홍보 강화 등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태료 사용에 더욱 연관성 및 당위성이 높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